

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전석기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
번호 491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 건축물 미술작품심의는 80명 이내의 심의위원 Pool제를 구성하고 심의회의는 13명 이내, 윤번제로 시행하였으나 2017년 11월부터 고정 20명의 심의위원으로 심의를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으며,
 - 20명 심의제로 변경된 후 작품의 질은 변동이 없는데도 심의 통과율이 65%에서 39%로 크게 하락하고 연속해서 7번 부결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심의로 인한 과다한 비용발생과 건축물 사용 시점 지연 등 부정적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.
 - 유사한 서울시 건축심의 등은 공정성과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약 150명의 Pool제로 특별한 문제없이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현행 20명의 폐쇄적인 심의방식을 개방적인 Pool제로 변경하여 시민 중심의 심의로 전환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인원수를 위원장을 포함 20명 이내에서 60명 이상 100명 이내의 Pool제로 변경하고 심의시마다 15명이상 20명 이내의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. (안 제21조제1항)
- 나.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석할 위원을 확정하고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려줌. (안 제22조제2항)
- 다. 건축주, 작가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22조제3항)
- 라.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함. (안 제22조제4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문화예술진흥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2020.02.04
의

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호 중 “위원장은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”를 “위원장은 포함하여 60명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시마다 15명이상 20명이내의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”로 한다.

제22조 중 “규정의 준용”을 “규정의 준용 등”으로 한다.

제22조 중 제2항부터 4항까지를 신설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석할 위원을 확정하고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려야 한다.

③ 건축주, 작가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.

④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004.04
의정부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1조(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<u>2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	<p>제21조(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 ----- ----- <u>60명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시마다 15명이상 20명이내의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</u></p>
<p>제22조(규정의 준용)</p> <p>①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〈신설〉</u></p>	<p>제22조(규정의 준용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안전과 심의에 참석할 위원을 확정하고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려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건축주, 작가 및 심의를 신청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.</u></p> <p>④ <u>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</u>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〈신설〉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〈신설〉</u></p>	